

● ● ● 한국혁신산업학회 논문투고규정 ● ● ●

제 1 조

투고 논문은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융복합 분야의 이론, 연구 및 그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여 독창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 2 조

논문 투고자 및 저자 모두는 반드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 3 조

투고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것이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별도로 제정된 한국혁신산업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시하거나 ()속에 원어를 써넣는다.

제 5 조

논문은 '.hwp' 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을 이용한다.

제 6 조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영문은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하며(단, 고유명사는 예외), 논문의 전체 길이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기본 6페이지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제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및 수정된 최종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원고 제 1면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원고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을 명기하여야 하며, 5~6개의 한글 주제어 및 영문 Keyword를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질 '교신저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 9 조

편집 용지는 폭 188, 높이 258로 하되 2단(단간격 6, 너비71, 단구분선 투명)으로 편집하고 용지 여백은 위쪽 0, 아래쪽 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28, 꼬리말 20으로 하며 기본 폰트는 신명조, 글자 크기는 9, 줄 간격 160%로 한다. 글자모양에서 장평은 96, 자간은 -8로 한다.

제 10 조

논문의 순서는 국문논문의 경우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소속, 한글 요약문, 영문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소속,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 영문 요약문, 한글 요약문,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제 11 조

저자 소개에는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한다(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제 12 조

참고문현 부분에는 본문 중에서 [1], [1-3], [1,2,5] 등과 같은 형식으로 참고 된 문현들만을 순서대로 나열하되,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기술한다.

- [1] D. A. Adjero & K. C. Nwosu. (2009). Title. Journal of Advanced Technology Convergence, 7(4), 1-10.
DOI : 10.22156/KCS.2017.7.1.001
- [2] G. D. Hong & H. K. Kim. (2017). Sensor-based convergence system in Ubiquitous Environment. Journal of Advanced Technology Convergence, 7(1), 1-6. DOI : 10.22156/KCS.2017.7.1.001 단행본 :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도시 : 출판사명
- [3] S. Khoshafian && B. A. Baker. (1995). Introduction to IT Convergence. San Francisco : Addison-Wesley.
DOI : 10.22156/KCS.2017.7.1.001
- [4] G. D. Hong. (2017). Information Convergence Technology. Seoul : HanKuk Publishing Co. DOI : 0.22156/KCS.2017.7.1.001 인터넷 인용 : 저자명. (년도). 제목(전자문서명). 웹사이트명(학회지명/서적명).URL
- [5] A. A. Author. (2017). Korea Society for IT Convergence for KCS. Name of Web Site. <http://www.kcs.or.kr> 회의 및 심포지엄 : 저자. (년도). 논문명. 심포지엄 책자명 (pp. 00-00). 출판도시:출판사명.
- [6] S. Y. Kim. (2017, May). Title. Conference. (pp. 2017-2019). Seoul : ICCT.

제 13 조

제목의 번호는 1., 1.1, 1.1.1 1), 가), (1), (가) 등과 같이 표기한다.

제 14 조

그림의 명칭은 하단 좌측에 Fig. 1. Title of figure, 표의 경우에는 표 상단 좌측에 Table 1. Title of tble과 같이 표기하고, 그림내용과 표내용 작성 시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제 15 조

논문 심사료는 30,000원을 논문 투고 시, 납부한다. 게재 승인 시 논문 게재료는 무료로 진행된다. 단, 지원기관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 16 조

게재된 논문은 PDF형태로 교신저자에게 송부한다. 별쇄본은 저자의 실비 부담으로 제공된다.

제 17 조

채택된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지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8 조

본 한국혁신산업학회 혁신산업기술논문지는 연 4회 발간(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제 19 조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 20 조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혁신산업학회에 있으며, 심사결과가 게재인 경우 저자들은 저작권 양도서류에 서명하여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혁신산업기술논문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한국혁신산업학회 논문심사규정 •••

제 1 조

본 규정은 한국혁신산업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논문지 “혁신산업기술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저자의 회원 확인 후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논문을 송부한다. 분과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3인의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한 후 교신저자에게 논문접수 확인서를 발송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제 3 조

분과위원장은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고, 논문심사의뢰서와 논문을 발송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계재가’, ‘수정후 계재’, ‘수정후 재심사’, ‘계재불가’로 판정을 내리며, 그 심사결과를 분과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분과위원장은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표”에 의거하여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표〉

심사결과				판정결과
계재가	수정후 계재	수정후 재심사	계재불가	
3	0	0	0	수정후 계재
2	1	0	0	
1	2	0	0	
0	3	0	0	
2	0	1	0	
1	1	1	0	
1	0	2	0	수정후 계재 or 수정후 재심사
0	2	1	0	
0	1	2	0	
0	0	3	0	

심사결과				판정결과
계재가	수정후 계재	수정후 재심사	계재불가	
2	0	0	1	수정후 계재 or 수정후 재심사 or 계재불가
1	1	0	1	
0	2	0	1	
1	0	1	1	
0	1	1	1	
0	0	2	1	
1	0	0	2	
0	1	0	2	
0	0	1	2	
0	0	0	3	

제 5 조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판정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계재가 : 수정 없이 계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 (2) 수정후 계재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계재가로 판정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분과위원장에게 보내고, 분과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수정여부 확인을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수정여부 결과를 다시 분과위원장에게 전하고, 분과위원장은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 (3) 수정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2회 까지만 허용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분과위원장에게 보내고, 분과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재심사 결과를 다시 분과위원장에게 전하고, 분과위원장은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 (4) 계재불가 : 계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 6 조

논문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의 전적인 권한이며, 본 학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또한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저자도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저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만 볼 수 있다.

제 7 조

논문계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논문의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고, 계재료를 납부한다. 편집위원장은 저자 요청이 있을 시 논문계재 권, 호, 발행예정일이 명시된 논문계재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제 8 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편집위원장이 심사 취소 통보한다.

제 9 조

투고된 논문이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논문이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판정한다.

제 10 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11 조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 해당 분과위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논문의 심사료는 심사위원에게 1만원을 지급한다. 분과위원장에게는 1만원의 심사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심사의뢰가 중지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분과위원장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혁신산업기술논문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 연구윤리규정 • • •

한국혁신산업학회회원(이하 회원)은 정보기술, 융합공학, 의료보건, 인문사회, 문화기술 혁신 융복합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혁신산업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혁신 융복합 산업 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융합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문서에 의하여 최고의 윤리적, 직업적 행위,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받기 위해 아래의 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혁신산업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논문집 거제)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논문, 특허 및 지적결과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한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중복 및 이중게재는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자료, 연구 결론이 유사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2개 이상의 학술지(일반 정기간행물 포함)에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 본 조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2007.2.8.)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판단하도록 한다.
- (9) ‘인용’이라함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 ②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③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④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⑤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⑥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⑦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 5 조(연구 수행의 정직성)

-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 (2) 연구자는 표절, 조작, 변조 및 위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연구자는 제4조에 준하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학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연구의 공개성)

-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적 연구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2) 연구 결과가 공개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자료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생명윤리)

- (1)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IRB(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는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저자의 책임)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 (2) 공동연구에 있어서 책임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와 감의 책임 또한 가진다.

제 9 조(타 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 (2)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함께 연구의 발주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2) 위원회는 부회장들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위원을 둔다.
- (4)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5) 위원은 상임이사 및 이사 중에서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4)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2 조(위원회 운영)

-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4) 심의 대상인 연구와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6)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원으로서의 책임

제 13 조 (기본방침)

회원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1) 공정과 성실을 중시한다.
- (2)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간다.
- (3)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 (4) 연구와 관련된 이해 관계의 공개를 필수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제 14 조(사회적 책임)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1) 융합정책의 진전과 그 성과가 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 (2) 융합정책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그 사실을 사회에 주지시키도록 노력한다.
- (3)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책임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15 조(사회적 신뢰)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3) 직무상 상호 합의 후 추진한 계약, 양해사항, 책임분담 등의 조항들을 존중한다.

제 16 조(지적재산권)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1)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존중하며, 인용시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
- (2)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3) 위조, 변조, 자기 표절 등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 (4) 주요 기초 또는 핵심구성요소로 사용된 다른 사람의 출판되지 않은 업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연구개발)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1) 연구개발에서는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고, 연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 (2) 연구개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 (3) 회원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문을 같고 닦아 기술적 발전에 공헌한다.

제 18 조(실시기준)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1) 회원은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공지 및 발표함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 (2) 회원 상호간의 개발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 (3) 회원은 융합정책분야의 사회 반응을 상시 파악하는 체제의 확립에 협력한다.

제 19 조(관리자기준)

회원이 자기가 소속하는 조직 내에서 관리적 입장에 있는 때에는 상기 항목을 스스로 준수하고, 하기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자기관리 하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준수를 촉구한다.
- (2) 조직의 체제정비 및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조직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성 검증

제 20 조(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 21 조(조사기간)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1) 조사는 신고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 (2)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제 22 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 23 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 24 조(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25 조(판정)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징계 조치

제 26 조(징계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2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제 27 조(운영세칙)

- (1)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2) 간사는 위원회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3년 3월 1일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한국혁신산업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혁신산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1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설치) 및 제4조(활동계획 및 운영) 3항에 의거하여,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혁신산업기술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 논문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받은 기타 업무

제3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편집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인, 간사 1명, 분과위원장 5인(정보기술, 융합공학, 의료보건, 인문사회, 문화기술)을 두며, 편집위원 40명 내외(각 분과마다 8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

-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간사, 연장자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는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각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5조 (위촉 및 임기)

- 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부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은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정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 및 심사)

- 논문지는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논문의 심사는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위원회는 위원회 명단,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을 논문지에 게재한다.
-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 (규정 해석 및 적용)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9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2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 • **한국혁신산업학회 발행규정** • • •

제1조 (발행일)

본 한국혁신산업학회 혁신산업기술논문지는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제2조 (발행인, 편집인)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 (저작권)

본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비용)

논문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게재 순서)

투고된 논문은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투고규정 준수)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논문은 반려한다.

제7조 (교정)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지 출판시 투고자가 직접 교정한다.

제8조 (별쇄본)

논문은 온라인 출판을 원칙으로 하며, 별쇄본은 저자의 실비 부담으로 제공한다.

제9조 (시행일)

본 규정은 혁신산업기술논문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혁신산업기술논문지

The Journal of Innovation Industry Technology

Vol. 2, No. 2, June 2024

2권 2호

인쇄일: 2024년 6월 30일

발행일: 2024년 6월 30일

발행처: (사)한국혁신산업학회

발행인: 이성환(학회장)

편집인: 조준호(편집위원장)

주 소: 대전 서구 월평새뜸로20번길 18, 102호

전 화: 042-483-2223

E-mail: (사무국) kiis22.member@gmail.com

(논문지) kiis22.paper@gmail.com

<https://www.koriis.kr/>